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9. 9. 박상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9.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9. 1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상혁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단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구현우)

- ☐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임.
- ☐ 현행법 제90조제2항은 동의의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개요, 관련 법령 조항 및 시정방안 등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

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제90조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개요, 관련 법령 조항 및 시정방안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되, 동의를결의 대상행위가 별척부과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별척부과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관한 동의를결을 할 때에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전속고발권의 취지, 동의를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다는 점,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는 동의를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임.

□ 개정안은 별척부과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의를결 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이때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가 폭넓게 변경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타당한 입법임.

- 공정거래법에서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도록 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24조와 제125조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인 중대범죄에 해당함.

4. 대체토론 요지

(1) 동의의결 절차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하되,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정안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각각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공소청법에서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수정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0조(동의를결의 절차) ①·② (생략)	제90조(동의를결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 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 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 ----- ----- ----- ----- 하고, 검찰총장은 중 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⑪ (생략)	④ ~ ⑪ (현행과 같음)